

[별표 4의2] <개정 2005.11.4>

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의 기준(제44조의2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그 중에서 중한 처분기준(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의하며,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.

나. 처분기준의 1차·2차·3차 및 4차라 함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.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재적발일로 한다.

다.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| 위 반 행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처 분 기 준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차         | 2차          | 3차         | 4차   |
| 가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
| (1)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정명령       | 지정취소        |            |      |
| (2) 농어촌민박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정명령       | 시정명령        | 지정취소       |      |
| 나. 관광농원에 입식작목의 경작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   | 사업정지<br>5일 | 사업정지<br>1월  | 사업정지<br>3월 | 지정취소 |
| 다.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
| (1)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          | 시정명령       | 사업정지<br>15일 | 사업정지<br>1월 | 지정취소 |
| (2) 법 제6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때  | 시정명령       | 사업정지<br>15일 | 사업정지<br>1월 | 지정취소 |
| (3) 관광농원사업을 법 제73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·양수한 때 | 시정명령       | 사업정지<br>1월  | 지정취소       |      |
| (4)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운영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
| (가)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           | 사업정지<br>15일 | 사업정지<br>1월  | 지정취소       |      |
| (나) 농어촌민박사업               | 시정명령        | 사업정지<br>15일 | 사업정지<br>1월 | 지정취소 |
| (5) 사업정지 처분기간 동안에 사업을 한 때 | 지정취소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